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 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되고 「지방세기본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,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「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 개정된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종전 조례 중 징수·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새로 제정 되는 「평창군 군세 징수 조례」로 이관하고 나머지 조문은 보완 정비함
- 나. 부과·징수 등의 권한 위임,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(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)
- 다.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의 송달방법, 교부 금전의 예탁,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함(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 1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평창군 공고 2017-528(2017.4.27~5.17) 결과,

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(기획감사실-5170호/2017.4.27)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(기획감사실-5877호/2017.5.18)

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(주민생활지원과-32857호)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 2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부과·징수 등의 권한 위임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위임 받은 강원도 도세(이하 “도세”라 한다)와 평창군 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의 부과·징수 중 납세고지서·독촉장·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,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·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군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(이륜자동차의

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다른 시·군·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·등록면허세·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.

제4조(서류송달의 방법)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,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.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,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라 읍장·면장·이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·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교부금전의 예탁) 채권자,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.

제6조(지방세심의위원회)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

명칭은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평창군 균세 기본조례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6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7조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7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9조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105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76조”로 한다.

② 「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「지방세기본법」 제80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

제25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”를 “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”로 한다.

③ 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”로 한다.

(별첨 1)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기본법

제5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(稅目), 과세대상, 과세표준, 세율,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□ 지방세징수법

2017년 3월 28일 법률 제14524호로 시행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별첨 2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재무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270